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6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김선교 · 김미애 · 박준태  
윤상현 · 김예지 · 박충권  
이종배 · 김소희 · 서천호  
김은혜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으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u>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 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u>2026년 12월 31</u>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688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u>2029년 12월 31</u>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 ----- -----<u>2029년 12월 31</u> 일-----.</p>